

## 4. 河川法施行規則中改正令

建設部令 第496號 1991. 12. 3

하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7조의4제1항중 “별표 1과 같다”를 “별표 1의 기간이내로 한다”로 한다.

[별표 1]의 7. 토석·사력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의 기간란중 “허가연도내”를 “1년”으로 하고, 9. 선박등 운항을 위한 점용의 기간란중 “3년이내”를 “3년”으로

한다.

[별표 2]의 자격란중 “영업자 납세번호증”을 “사업자등록증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□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□

토석·사력 기타 하천 산출물을 채취하기 위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는 경우에 하천점용허가기간을 종전에는 허가연도내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하천점용허가를 받는 날로부터 1년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토석·사력 기타 하천산출물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,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·개선하려는 것임.

〈건설부 제공〉